하중초등학교 규칙

하중초등학교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하중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하중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어린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어린이, 자연과 예술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하중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하중로 209번길 10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u>수업일수, 휴업</u> 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6월 1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년말 방학
 -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①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①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을 해당 학년 범위 이내,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현장체험운영방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있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① 평가는 교사별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내용은 하중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전·편입학·유예 및 면제

제16조(입학자격)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본교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단 특수교육 대상자 등은 예외규정에 따라 처리함)
- 2.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거 취학의무가 부여된 자
- **제17조(입학시기)**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8조(입학방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18조, 제22조, 제25~27조, 제29조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제19조(재취학) 본교를 유예·면제한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정원외로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한다. 단, 재취학 학년도 학교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진급·졸업을 할 수 없다.

제20조(전·편입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 ③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 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유예 및 면제)

- ①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에 의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 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내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하다.
- 제22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①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수 있다.
- ② 제16조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6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제27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생활 포상 및 징계

제28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 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학생 시상 규정에 따라 학생을 표창한다.

제30조(학생장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훈계
- 2. 학급 및 학교 내 봉사활동
- 3.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의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⑥ 흡연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의 교사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모든 학생 및 교직원, 학교 방문객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⑦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 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흡연과 관련된 일체의 홍보행위를 금지한다.
- ⑧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10장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중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 · 운영 한다.
- 제3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중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34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② 제①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일정기간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3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36조(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규정에 의한다.
 - 제3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본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세부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 제38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이 학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학칙은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학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